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김철민·박 정·권칠승

서영교 • 백혜련 • 이원욱

이정문 · 김민기 · 안민석

한병도 • 윤후덕 • 임종성

이용선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'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그렇지 않은 비(非)장애인 유 권자처럼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움.

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 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아울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'수화'를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서 정한 용어인 '한국수어"로 대체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6항 중 "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"를 "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0條(放送廣告) ① ~ ⑤ (생	第70條(放送廣告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	6
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	
障碍選擧人을 위한 수화 또는	한국수어
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.	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.
⑦ ·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